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88
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함(안 제명, 제1조)

○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⇒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○ 근거: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

나.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(안 제2조)

○ 법령개정사항(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,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,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) 미반영으로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

다.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(현행 제4조)

○ 법령 개정사항(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, 과징금에 관한 사항) 미반영,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“자문”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

라.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(안 제2조 ~ 제8조)

○ 위원장의 직무, 부위원장, 간사, 회의, 심의요청, 의견청취, 수당, 운영세칙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6. 11. 2. ~ 11. 22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반영함(안 제2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고려사항)

(6) 도내 조례 개정 현황

○ 개정완료(13곳): 거제시,김해시,사천시,양산시,진주시,창원시, 통영시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함안군,함양군,합천군

○ 입법예고 중(5곳): 경상남도, 밀양시, 산청군, 의령군, 창녕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요청)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